고 발 장

고 발 인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고발인 대표자 : 나현필)

송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6 길 74 3 층

피고발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위 피고발인들의 주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 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회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1 항 제 7 호(내란 선동, 선전), 제 9 호(재판 및 수사 방해) 범죄혐의,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이를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서론

2024. 12. 3.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12. 3. 비상계엄과 국회 군 투입 등 일련의 행위(이하 '12. 3. 내란사태'라 합니다)는 모든 시민의 평온을 해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동행위로서, 국가의 존립을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에게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비상계엄은 선포 그 자체만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초랬습니다. 내란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 내에도 무수한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시민의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도 합니다)는 12. 3. 내란사태에 침묵하고 시민들이 낸 인권침해 진정은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25. 2. 10.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탄핵심판의 신속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을 보호하는 권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리고 이들에 동조한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위원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12. 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자신의 과오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도를 통해 이들 인권위원들이 어떻게 내란수괴와 공범들을 옹호하였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옹호위원회라고 조롱당하며 그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추락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관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범죄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란특검법')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고발하오니,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고발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36 개 인권·시민단체들의 연합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을 막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로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안창호는 제 10 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발인 김용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피고발인 강정혜, 피고발인 이한별, 피고발인 한석훈은 각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각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가. 관련 규정

형법

제 87 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 90 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 87 조 또는 제 88 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 87 조 또는 제 88 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123 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 년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7.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나. 피고발인 김용원의 내란 선전, 선동

피고발인 김용원은 인권위 상임위원(2023. 2. 6. ~ 현재)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맞는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김용원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합니다.

202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선동하는 극우유튜버 등이 집단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시설을 부수고, 경찰, 기자,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저지른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무엇보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극우세력에 의해 점거되었다는 것에 모든 시민들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에 우려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사라지지도 않은 2025. 2. 5. 피고발인 김용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에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무료변론을 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증 제 1 호증 기사 - 미디어스, '전한길 무료 변론 자청' 인권위원_탄핵하면 헌재 부수어 없애야, 아래 사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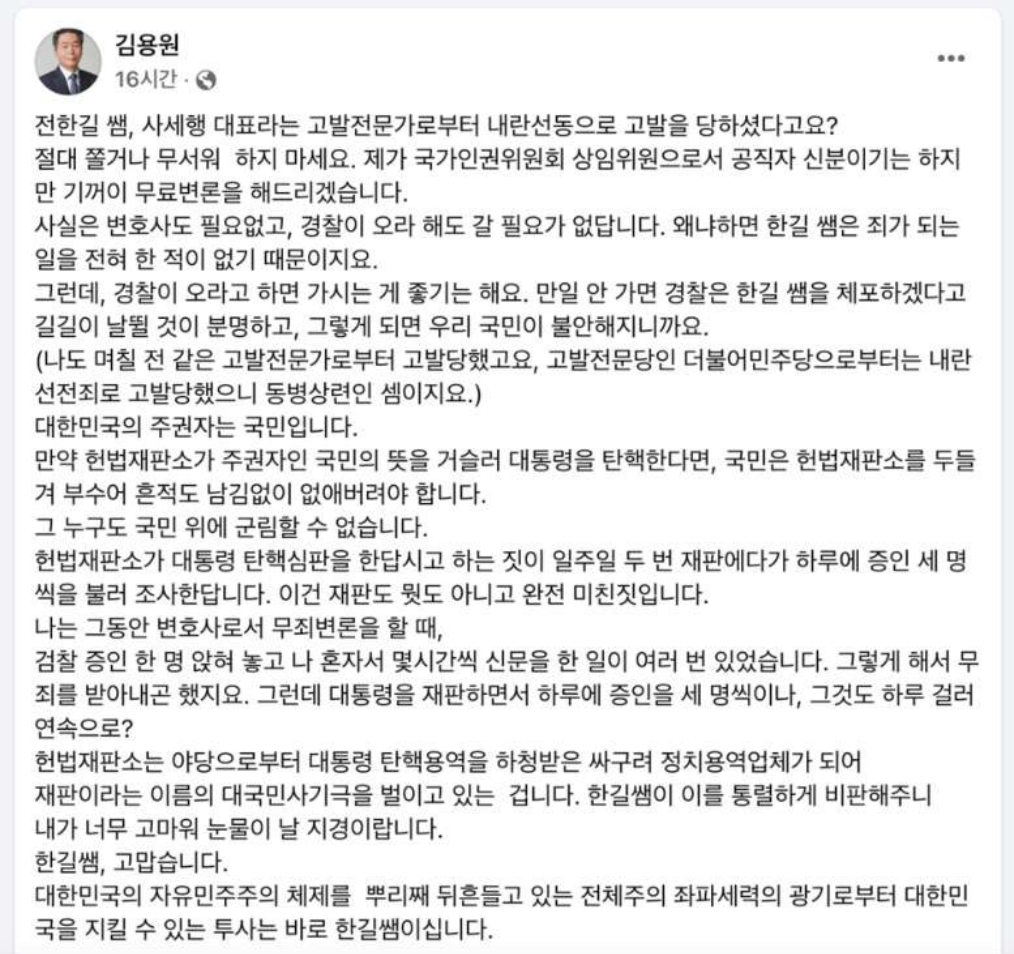

김용원
16시간 ·

전한길 쌤, 사세행 대표라는 고발전문가로부터 내란선동으로 고발을 당하셨다고요?
절대 쫄거나 무서워 하지 마세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한길 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만일 안 가면 경찰은 한길 쌤을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지니까요.
(나도 며칠 전 같은 고발전문가로부터 고발당했고요, 고발전문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는 내란선전죄로 고발당했으니 동병상련인 셈이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답니다.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짓입니다.
나는 그동안 변호사로서 무죄변론을 할 때,
검찰 증인 한 명 앉혀 놓고 나 혼자서 몇시간씩 신문을 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받아내곤 했지요. 그런데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하루에 증인을 세 명씩이나, 그것도 하루 걸러 연속으로?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한길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쌤이십니다.

2025. 2. 5. 김용원 페이스북 게시글

이후 피고발인 김용원은 위 2. 5.자 게시글을 해명한다면서 2025. 2. 7. 재차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려 "국민은 분노가 하늘에 닿으면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를 부수고 공중분해를 시키는 일쯤은 식은 죽먹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실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 '재판이 아니고 재판의 이름을 도용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증 제 2 호증 기사 - 미디어스, '헌재 부숴야' 인권위 김용원, 이번엔 '헌재 공중분해 식운 죽먹기')**.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피고발인 김용원은 차관급 공무원이자 인권위에 단 세 명만 있는 상임위원으로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인권위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 김용원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비방하고 탄핵 시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 공중분해를 시킨다와 같은 과격한 언사를 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인터넷 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평면도가 올라오고, '숙청', '척살' 등 극단적 표현이 올라오는 등 폭동을 모의한 정황이 여럿 발견되기도 했습니다.[1] 이러한 일들이 오로지 피고발인 김용원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인권위 상임위원이 앞장서서 선전, 선동을 한 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용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을 선전, 선동함으로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습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로 인한 재판방해

피고발인 김용원은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대표로 발의하였고, 피고발인들은 2025. 1. 13.경 '(긴급)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시도하였으나, 소라미, 원민경 인권위원 등의 반발과 시민사회, 인권위 직우원들의 항의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한달 여가 지난 2025. 2. 10.경

[1] 한겨레 (2025. 2. 9.) "서부지법 이어 '헌재 난동' 모의 정황…경찰, 작성자 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530.html

전원위원회에 위 안건을 긴급안건으로 다시 상정하여 졸속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당시 의결에 찬성한 위원은 피고발인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의 5 인과 현재는 사직한 전 상임위원 이충상입니다. 위 안건에서 가결된 내용 및 각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증 제 3 호증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

1. 헌법재판소장에게,

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 헌나 8)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 헌나 6)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5 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대통령 윤석열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위 권고안 판단 이유 부분에서는 당시 윤석열 및 책임자의 수사, 재판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 소속의 법관들은 2024. 12. 3. 계엄 선포에 관련되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철저한 검토 없이,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의심을 받기도 한다. 심지어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됨으로써 영장 담당 판사 쇼핑 논란도 있었다.

우리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계엄 선포가 과연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하급심 법관들이 그 유죄를 단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계속 박탈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5 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관련]

앞서 살핀 것처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원칙에 근거하여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는 거의 종결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들이 다시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내란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의심을 받기도 한다', '영장담당판사 쇼핑 논란이 있었다', '하급심 법관들이 유죄를 단정하여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등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설사 일각에서 내란 책임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비판 견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권고안으로써 명시한 것은 그 자체로 영향과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영장 청구 및 발부, 수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관할기관을 압박한 것은 재판 및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각 기관에 독립성과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비록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인권위의 결정은 권위있는 국가인권기구의 판단으로서 국가기관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피고발인 김용원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피고발인들이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 군 관계자 모두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가운데 인권위만이 유일하게 국가기구로서 비상계엄이 오히려 통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시하며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범죄 혐의는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12.3 내란특검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세력을 뿌리뽑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범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2.3 내란 당일 직접 가담자 외에도, 적극적으로 권력을 이용하여 내란을 옹호하고 수사를 방해한 자들에 대하여도 엄단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위 안건 상정의 경위, 근거 등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고발인들의 12.3 내란사태에 대한 재판 및 수사 방해를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 피고발인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의 보석허가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 등과 관련한 범죄사실

1) 관련 사실관계

(1) 군인권보호위원회의 보석허가 의견표명 결정

피고발인 김용원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인권 구제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의 직위에 있고. 피고발인 이한별, 한석훈은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 위원회의 의결권한을 가진 자들입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25. 2. 18.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내란을 일으켜 구속되어 군교정시설 중에 수용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이하 “여인형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와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긴급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는 진정 및 긴급구제안건이었습니다(25 긴급 0000500, 25 진정 0097900, 25 긴급 0000600, 25 진정 0106800).

위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피고발인은 김용원은 내란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등을 ‘최고급 지휘관’으로 지칭하며 보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발인 한석후 위원도 '내란죄 성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거들었습니다**(증 제 4 호증 기사 - [단독] "수십만 지휘하는 최고급 지휘관들"…'내란장성' 감싼 김용원 녹음 입수)**. 그러나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안건 자체가 각하되었고, 이에 피고발인들은 별도로 여인형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마련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위 진정 중 여인형 등에 대한 일반인 접견 및 서신수발 금지 조치에 대한 부분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 조 제 1 항 제 1 호). 그리고 위 진정 중 여인형 등을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한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 조 제 1 항 제 7 호).

그런데,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여인형 등을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조치를 위와 같이 각하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법 제 25 조 제 1 항을 이유로 들며 진정사유도 아닌 신속한 보석허가에 대한 적극 검토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계엄선포는 통치행위이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인형 등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범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진정에서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박안수까지 포함하여 이들에 군사법원이 이들에 대한 보석허가를 적극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증 제 5 호증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

피고발인 김용원은 위 의견표명 및 권고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25. 2. 19.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위와 같은 의견표명의 내용을 언론 및 대중에 공개하였습니다**(증 제 6 호증 [보도자료] 20250219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 계엄 관련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2) 피고발인 김용원의 군사법원에 대한 보석허가 촉구 서한 발송

위 (1)항 기재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견 표명 이후인 2025. 3. 7.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가 결정되어 윤석열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발인 김용원은 윤석열의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박안수 및 여인형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사법원에 신속한 보석허가를 촉구하는 서한을 군인권보호관 명의로 발송하였습니다**(증 제 7 호증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허가 및**

불구속재판 촉구)

이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 윤석열이 석방된 이유는 내란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가지 특수한 사정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야당 등이 주도한 강력한 불법적 내란몰이 공작의 일시적 성공에 기인한 국민적 여론 악화, 이에 편승한 수사기관들의 광적인 수사 경쟁 및 일부 법관들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이고, (2) 군인권보호위원회가 2018. 신속한 보석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군사법원은 이를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 결과 군 고위 지휘관들이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3) 대통령 이외의 모든 피고인들이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그 재판부가 신속하게 임의적 보석 허가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키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용원은 위 서한 발송사실 및 서한 자체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에 공개하였습니다**(증 제 8 호증 [보도자료] 20250312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 촉구)**.

2)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1) 피고발인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의 내란선전 및 수사, 재판 방해

상술한 바와 같이 박인수 및 여인형 등에 대한 보석허가 권고는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상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은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석허가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 등의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세력이 주장해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 피고발인들은 내란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진정사유도 아닌 보석허가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무리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내란을 선전한 것이며 앞서 다.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과 마찬가지로 영장 청구 및 발부, 수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관할기관을 압박한 것으로 재판 및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피고발인 김용원의 직권남용

특히 피고발인 김용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의견표명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군사법원에 서한을 보내어 박인수 및 여인형에 대한 보석을 강력히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고, 이러한 서한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군사법원이 실제로 박안수와 이진우에 대해서는 보석을 결정하였는바[2],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내란 선전·선동, 직권남용 재판 및 수사방해이에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내란 특검에서 향후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2] 한겨레, 군사법원, '내란 혐의' 박안수·이진우 주거 제한 등 조건 걸고 보석 허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04637.html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증 제 1 호증 기사 - 미디어스, '전한길 무료 변론 자청' 인권위원 _탄핵하면 헌재 부수어 없애야
2. 증 제 2 호증 기사 - 미디어스, '헌재 부숴야' 인권위 김용원, 이번엔 '헌재 공중분해 식운 죽먹기
3. 증 제 3 호증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
4. 증 제 4 호증 기사 - [단독] "수십만 지휘하는 최고급 지휘관들"…'내란장성' 감싼 김용원 녹음 입수
5. 증 제 5 호증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
6. 증 제 6 호증 [보도자료] 20250219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 계엄 관련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7. 증 제 7 호증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허가 및 불구속재판 촉구
8. 증 제 8 호증 [보도자료] 20250312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 촉구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부

1. 위임장 각 1 부

2025. 7. 7.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박한희

변호사 최새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귀중